

제22대 국교련 제1차 회장단회의 결과

- 일 시 : 2019년 9월 27일(금) 15시
- 장 소 : 안동대학교 국제교류관 2층 중회의실
- 참석자 : 공동회장단교 17/23개교, 전체교 21/41개교

연번	학교	직위	참석자
1	국교련	상임회장	이형철
2		사무총장	최인철
3		정책위원장	송기춘
4	강원대학교 교수회	회장	이기홍
5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수회	의장	김성호
6		부의장	최경옥
7	경상대학교 교수회	회장	권오현
8		부회장	백승철
9	금오공과대학교 교수회	회장	김상호
10	목포대학교 교수평의회	의장	박양균
11	부산대학교 교수회	회장	김한성
1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평의회	의장	신윤호
13		부의장	김재수
14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조철원
15	순천대학교 교수회	의장	조래철
16	안동대학교 교수회	회장	박응임
17		제2부회장	김태완
18		사무국장	전성건
19		정책국장	최돈승
20		담당자	허혜정
21	전남대학교 교수회	회장	김도형
22		정책연구원	정재우
23	전북대학교 교수회	부회장	소은선
24		사무처장	임익태
25	제주대학교 교수회	회장	오홍식
26		정책처장	제갈윤석
27	창원대학교 교수회	의장	류병관
28	춘천교육대학교 교수회	회장	박승규
29	충남대학교 교수회	회장	김종성
30	충북대학교 교수회	회장	이성덕
31	한국교통대학교 교수회	회장	남중웅
32		사무처장	류정호
33		실무관	김선미
34	한국해양대학교 교수회	회장	김상구
35	한밭대학교 교수회	회장	임경빈
36		부회장	이봉호
37		부회장	이준우

38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간사	천정엽
39	국교련 집행부	전문위원	박상국
40		기획간사	배원미

I. 제21대 국교련 제1차 정기총회 회의록 보고

- 자료집 1p 참조.
- 원안 채택.

II. 활동보고

- 구두보고. 자료집 5p 참조.

활동보고 1. 공문발송 (제22대 국교련 제1차 회장단회의 개최 협조 요청)

활동보고 2. 공문발송 (제22대 국교련 ‘제1차 회장단 회의’ 참석 요청)

활동보고 3. UCC 공모전 실시 관련 보도자료 배포

(“대학교육 개혁 및 고등교육위원회 설치(교육부 폐지)”를 주제로 한 UCC 공모전)

- 10월 공모전 종료 후 이 문제를 다시 이슈화할 예정. 10월 회장단회의 때 다시 보고.

활동보고 4. 공문발송 (전국 통합 교수노동조합 결성을 위한 간담회 제안에 대한 회신)

활동보고 5.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규탄 국교련 성명서 일본 지식인 단체에 전달

- 경상대 권오현 교수님, 순천대 조래철 교수님께서 일본어로 번역. 일본 지식인 단체에 전달이 되었음.
- 다음 주 중 보도자료 배포 예정. 각 회원교에서 일본의 교수회나 전달해야하는 다른 단체에 대한 리스트를 주시면 추가로 성명서 배포하고자 함.

활동보고 6. 국회의원 면담

- 9월 26일(14:00~17:00)에 고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의원 중 여영국 의원 보좌관, 윤소하 의원 보좌관, 장정숙 의원 보좌관 면담 면담 후 국교련 의견 전달
- 10월 8일, 10일, 15일(예정)에 국회 추가 방문 예정. 국회 집중적으로 방문 필요.

Ⅲ. 보고 및 논의사항

보고사항 1. 대학교육개혁 및 고등교육위원회 설치(교육부 폐지) 홍보를 위한 국교련 UCC 공모전 홍보

- 자료집 15p 참조.
- 각 회원교에 포스터 배포 완료. 각 회원교 교수회에서 적극적으로 홍보 및 공모전 참여 독려 부탁.

보고사항 2. 공문발송(고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교련 의견서 제출)

- 자료집 16p 참조.
- 각 회원교에서 의견서 제출시 이메일보다는 우편이나 등기 등의 방법으로 제출 요망.
- 의견서에 대한 송기춘 위원장님 정리 및 의견.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 : 국공립대학에서의 대학평의원회의 운영에 대한 객관적 평가 없이 기능과 권한을 변경하려고 함. 대학의 운영에서는 대학의 자율성과 교육의 전문성이 중시되어야 하지만 이를 극도로 침해하는 것이 개정법률안임.
 -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 : 대학의 문제는 총장의 전횡과 이에 대한 적절한 견제의 부재가 주된 원인임. 대학의 장 임용후보자의 선정과정에서 교원이 구성단위 중 하나로 여겨지는 것은 교육의 전문성을 고려했을 때 허용될 수 없음.

보고사항 3. 기타보고

- 정책위원회가 전주에서 양일(10월 18~19일)간 개최 예정. 정책위원회를 다시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정책위원회가 다시 구성될 예정. 각 회원교에서 적극적 협조 요청.
- ‘가)국립대가 나아갈 길’ 12월에 북스힐에서 발간 예정. 국립대 주요현안들에 대한 좋은 글들이 있음. 각 회원교에서 규모에 따라 10부 혹은 20부 정도 구매 요청. 국교련에서도 추가 구입 후 배포 예정. 각 회원교에서는 이와 관련된 예산 편성 부탁.

논의사항 1. 고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 발의의원보다는 교육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설득이 더욱 필요. 10월 8일, 10일, 15일 3일간(가안) 국회 방문 예정. 정책위원회 및 각 회원교 회장님들의 동참 부탁. 지역구 소속 의원들이 있다면 소속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설득 부탁.
-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가 교수들의 기득권 지키기로 보일 수 있음. 하지만 고등교육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 교수들이 교육과 연구에 책임을 지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에 역행하는 법안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음. 국회 방문 일자 중 가능한 날짜를 다음 주에 확정해서 각 회원교에 전달 예정. 적극적 참여 부탁.
- 질문: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국회의원 면담 시 분위기 및 우리의 대응 방안.

답변: 여영국 의원 보좌관의 경우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가 있지만 학생이 전체 평의원 정수의 4분의 1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없음. 강정숙 의원 보좌관의 경우 법안 통과에 회의적 입장. 하지만 이전 법안 통과 경험을 고려해서 좀 더 강력한 의사 전달 및 제스처 필요.

첨언: 이전 법률안 통과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할 계획임. 대학이나 교육에 대한 법률안을 만들 때 교수 및 교수단체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력한 의사 전달 필요. 대학이 바로 가기 위한 대안 제시도 계획하고 있음. 지금 당장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작금의 문제를 진지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

- 지난번 대학평의회가 통과되는 과정을 참고해서 입법 발의 취지를 잘 살필 필요 있음. 너무 잦은 개정은 문제가 있다는 논리적 지적도 필요.

논의사항 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폴리페서 방지법)에 대한 국교련의 입장

- 정책위원회와 상의해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 후 해당 의원들에게 송부 예정.
- 우리 스스로가 써달라 말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됨. 언급을 하지 않았으면 함.
- 정책위원회에서 좀 더 고민 후 의견서가 필요하다면 10월 회장단 회의 때 승인을 받고 행동을 취하도록 하겠음.

논의사항 3. 국립대학육성사업 및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편성 관련 국교련의 입장

- 예산안 편성 및 의결, 집행, 결산안 편성 및 의결 총 5가지 프로세스를 총장이 독식하고 있음. 이 부분을 국회에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고 국교련의 공식적 입장을 정리하고자 함. 각 학교별로 재정 및 예산에 대한 의견을 빨리 제출해서 공론화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재정위원회에 관한 제 규정은 현재의 재정위원회의 의결사항임. 이 부분은 교육부가 나서서 해결하지 않으면 개별 회원교에서는 정리 불가. 결국 국교련이 나설 필요가 있음.
- 질문: 국교련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하자는 제안인지.
답변: 이 사업의 성격은 재정지원을 해주는 측면도 강하게 있음.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재원 배분과 학교 활성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론화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
- 의견: 표준을 만들면 자율성을 침해할 위험이 있음.
답변: 국교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자는 의미가 아님.
-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 문제는 예산 사용방식에 있어서 문제.
- 예산 편성시 예산 담당자들을 압박할 필요가 있음. 총장의 마인드가 중요. 좋은 쪽의 사례를 가지고 대학교 자체 내에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됨.
- 이 사업은 대학의 자율적 사업이고 학교 내에서의 문제임. 국교련 차원에서 대학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미임.
- 예산 편성, 집행기관은 있지만 심의, 감사 기관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임.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함.

- 예산 사용 시 자율적 부분이 없으므로 이 부분을 국교련 차원에서 자율항목을 요구했으면 함. 하지만 사립대 교수가 심사를 하므로 사립대에 빌미 제공의 위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 국교련의 공통된 의견을 토대로 행동강령을 만들자는 의미가 아니라 문제인식을 하자는 의미임. 예결산 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님.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시고 공론화하자는 의미. 국립대 육성사업은 계속 키워나가야 하는 사업이고 자율성을 줘야하는 것은 맞지만 총장들의 독단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미임.

논의사항 4. HK 사업 이후 전임교수 TO 확보 방안

- HK 사업 종료 후 재정 압박을 받고 있음. 같은 상황의 여러 다른 대학이 있다면 차후 교육부 방문시 국교련이 별도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시기를 요청함.
- 무리한 사업을 교육부가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음. 교육부에 갈 때 자료를 만들어서 문제제기를 하겠음.
- 같은 입장의 학교가 있다면 국교련과 함께 교육부에 같이 방문했으면 함.

논의사항 5. 가)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창립 추진 관련

※ 가)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창립추진위원회

- 자료집 48p 참조.
- 창립추진위원 신청서 개별작성.
- 10월 25일 한국교통대에서 창립 총회를 가질 예정. 규약에 대한 검토가 필요. 의견을 충분히 규합해서 10월 25일에 의결 예정.
- 취지를 설명했지만 신청자가 없었음.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부분을 명확히 해주기를 부탁.
-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는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국교련의 공식입장은 노조는 유니언이고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이익단체임. 국교련과 노동조합은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름. 추진을 도와준다는 의미이지 당연히 교수노조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은 아님. 연석회의로 인해 오해의 소지가 있었음.
- 노조에 강제성이 없는 것은 기본임. 교육부를 만나려면 교섭권이 없다는 것이 힘든 점임. 교육부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전국 규모 단체가 필요. 또한 결정사항에 대한 구속력은 모든 대학에 미치게 됨.
- 각 대학이 지회를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음. 현재 지회, 지회장을 만드는 것은 버거울 수 있음. 지부 및 지회의 설치에 대해 '둔다'를 '둘 수 있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교육부는 임의 단체를 만나주지 않음. 노조가 있다면 안 만난다는 말이 불법이므로 교섭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됨.
- 규약 부분을 빨리 진행했으면 함.

- 제2조(목적) 부분에 대한 수정과 제3조(사업)의 2번은 4번 안으로 넣었으면 함.
- 좋은 의견에 감사드리며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총회에서 개정 예정임.

논의사항 6. 기타논의

- 없음.

<회의사진>

